

## 공시송달 공고

-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4.2.28. ~ 2024.3.14. (15일간)
- 공고대상

부과대상		위반내용	부과금액		반송사유
성명	주소		과태료	가산금	
이○진	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***번길 **, ***호 (주안동, 롯데이텔)	쓰레기 무단투기	200,000원	8,400원	폐문부재
김○진	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 **, ***호(주안동, 주안**빌주상복합)	쓰레기 무단투기	100,000원	4,200원	폐문부재
고○영	인천 남동구 용천로*번길 *-**, *동 ***호(구월동, 세*빌라)	쓰레기 무단투기	50,000원	2,100원	폐문부재

#### 4. 공고내용

- 가.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,
- 나. 위 공고기간 내에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(☎032-728-6325)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,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되며,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2월 28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장

